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-316호

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

2018. 7.25.

식품의약품안전처

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-316호

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(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8-54호, 2018. 7. 13.)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,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7월 25일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

1. 개정 이유

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여 다양한 고령자용 식품이 제조되어 유통될 수 있도록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기준·규격을 신설하고자 함

식품원료 목록 중 재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쿠네아타 산사(일본호손) 및 호손을 삭제하고, 갈매보리수나무(씨앗)을 전래적 섭취 근거를 고려하여 제한적 사용원료로 전환하고자 함

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가. 고령친화식품의 기준·규격 신설[안 제2. 2. 25), 제2. 3. 4) (1) 라]

1) 사회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에게 적합한 식품이 제조되어 유통될 수 있도록 기준·규격 마련 필요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최민지 / 세계무역기구과 / 2018-07-26 09:17:24

2) 고령친화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신설

3) 다양한 고령친화식품이 유통되어 식품산업활성화 및 소비자의 선택기회 보장

나. 식품원료의 사용조건 제한[안 별표 1, 별표 2]

1)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식품원료 정비 필요

2) 식품원료의 재평가 결과, 위해 발생우려가 있는 쿠네아타산사(일본호손) 및 호손을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

3) 갈매보리수나무의 씨앗을 유지제조용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적 사용원료로 전환

4) 식품원료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공급

다.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[안 별표 4 중 (24) 디클로베닐, (31) 마이클로뷰타닐, (59) 비터타놀, (66) 사이퍼메트린, (67) 사이플루트린, (68) 사이할로트린, (178) 폭심, (302) 포세틸알루미늄]

1) 국내 잠정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약 및「농약관리법」에 신규 등록된 농약에 대해 안전사용기준에 따른 잔류자료로 기준 개정 필요

2) 디클로베닐 등 8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

3)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

3. 의견 제출

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 일부개정고시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(우편번호 : 28159, 주소 :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, 참조 : 식품기준과, 전화 043-719-2420, 팩스 043-719-2400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・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최민지 / 세계무역기구과 / 2018-07-26 09:17:24

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-00호

「식품위생법」 제7조제1항에 따른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-54호, '18. 7. 13.)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8년 0월 00일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(안)

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. 2. 중 25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5) 고령친화식품은 다음에 적합하게 제조·가공하여야 한다.

(1) 고령자의 섭취, 소화, 흡수, 대사, 배설 등의 능력을 고려하여 제조·가공하여야 한다.

(2) 미생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과일류 및 채소류는 100 ppm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함유한 물에 10분 침지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방법으로 소독 후 깨끗한 물로 충분히 세척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육류, 식용란 또는 동물성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충분히 익도록 가열하여야 한다.

(3) 제품 100 g 당 단백질, 비타민 A, C, D, 리보플라빈, 나이아신, 칼슘, 칼륨, 식이섬유 중 3개 이상의 영양성분을 제8. 일반시험법 12. 부표 12.10 한국인 영양섭취기준(권장섭취량 또는 충분섭취량)의 10% 이상이 되도록 원료식품을 조합하거나 영양성분을 첨가하여야 한다.

(4) 고령자가 섭취하기 용이하도록 경도 500,000 N/m^2 이하로 제조하여야 한다.

제2. 3. 4) (1) 중 라.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고령친화식품

① 대장균군 : n=5, c=0, m=0(살균제품에 한함)

② 대장균 : n=5, c=0, m=0(비살균제품에 한함)

try of Trade
try and Energy

[별표 1] 1. 중 A가00580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A가005800	갈매보리수나무	비타민나무, Sea buckthorn	*Hippophae rhamnoides* L.	열매(씨앗제외), 잎

[별표 1] 1. 중 A가163600을 삭제한다.

[별표 1] 1. 중 A가184400을 삭제한다.

[별표 2] 1. 중 B가00045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최민지 / 세계무역기구과 / 2018-07-26 09:17:24

B가000450	갈매보리수나무	비타민나무, Sea buckthorn	*Hippophae rhamnoides* L.	씨앗	유지 제조용 원료에 한함

[별표 4] (24) 디클로베닐(Dichlobenil) 중 “복숭아 0.15^{T}”를 “복숭아 0.05”로 한다.

[별표 4] (31) 마이클로뷰타닐(Myclobutanil) 중 “모과 1.0^{T}”를 “모과 0.3”으로 한다.

[별표 4] (59) 비터타놀(Bitertanol) 중 “체리 2.0^{T}”를 “체리 1.0”으로 한다.

[별표 4] (66) 사이퍼메트린(Cypermethrin) 중 “마늘 5.0^{T}”를 “마늘 0.05”로 하고, “밤 2.0^{T}”를 “밤 0.05”로 하며, “양파 0.1^{T}”를 “양파 0.05”로 한다.

[별표 4] (67) 사이플루트린(Cyfluthrin) 중 “대두 0.5^{T}”를 “대두 0.05”로 한다.

[별표 4] (68) 사이할로트린(Cyhalothrin) 중 “멜론 0.5^{T}”를 “멜론 0.05”로 한다.

[별표 4] (178) 폭심(Phoxim) 중 “마늘 0.1^{T}”를 “마늘 0.05”로 한다.

[별표 4] (302) 포세틸-알루미늄(Fosetyl-aluminium) 중 “고추 20.0^{T}”를 “고추 3.0”으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[별표 1] 및 [별표 2]의 개정규정은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, [별표 4]의 개정규정은 고시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·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(신적일 기준)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・가공・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최민지 / 세계무역기구과 / 2018-07-26 09:17:24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
제1. (생 략)	제1. (현행과 같음)
제2.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	제2.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제조·가공기준	2. 제조·가공기준
1) ~ 24) (생 략)	1) ~ 24)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25) 고령친화식품은 다음에 적합하게 제조 · 가공하여야 한다.
	(1) 고령자의 섭취, 소화, 흡수, 대사, 배설 등의 능력을 고려하여 제조·가공하여야 한다.
	(2) 미생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과일류 및 채소류는 100 ppm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함유한 물에 10분 침지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방법으로 소독 후 깨끗한 물로 충분히 세척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육류, 식용란 또는 동물성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충분히 익도록 가열하여야 한다.
	(3) 제품 100 g 당 단백질, 비타민 A, C, D, 리보플라빈, 나이아신, 칼슘, 칼륨, 식이섬유 중 3개 이상의 영양성분을 제8. 일반시험법 12. 부표 12.10 한국인 영양섭취기준(권장섭취량 또는 충분섭취량)의 10% 이상이 되도록 원료식품을 조합하거나 영양성분을 첨가하여야 한다.
	(4) 고령자가 섭취하기 용이하도록 경도 500,000 N/m^2 이하로 제조하여야 한다.
3.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	3.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
1) ~ 3) (생 략)	1) ~ 3) (생 략)
4) 위생지표균 및 식중독균	4) 위생지표균 및 식중독균
(1) 위생지표균	(1) 위생지표균
가. ~ 다. (생 략)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라. 고령친화식품
	① 대장균군 : n=5, c=0, m=0 (살균제품에 한함)
	② 대장균 : n=5, c=0, m=0(비살균제품에 한함)
(2) ~ 4. (생 략)	(2) ~ 4. (현행과 같음)
제3. ~ 제7. (생 략)	제3. ~ 제7. (현행과 같음)
[별표 1] "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"의 목록	[별표 1] "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"의 목록

try of Trade, try and Energy

최민지 / 세계무역기구과 / 2018-07-26 09:17:24

현 행

1. 식물성

고유번호	명칭	기타명칭 또는 시장명칭	학명 또는 특성	사용부위(생약명)
A7I000100 ~ A7I005700	(생 략)			
A7I005800	갈매보리수나무	비타민나무, Sea buckthorn	*Hippophae rhamnoides* L.	열매, 잎, 씨앗
A7I005900 ~ A7I163500	(생 략)			
A7I163600	쿠네아타산사	일본호손, Japanese Hawthorn	*Crataegus cuneata* Siebold & Zucc.	열매
A7I163700 ~ A7I184300	(생 략)			
A7I184400	호손	유럽산사나무, Hawthorn	*Crataegus monogyna* Thunb.	순, 잎, 열매, 꽃, 씨앗
A7I184500 ~ A7I367400	(생 략)			

[별표 2] "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"의 목록

1. 식물성

고유번호	명칭	기타명칭 또는 시장명칭	학명 또는 특성	사용부위(생약명)	사용조건
B7I000100 ~ B7I000400	(생 략)				
<신 설>					

개 정(안)

1. 식물성

고유번호	명칭	기타명칭 또는 시장명칭	학명 또는 특성	사용부위(생약명)
A7I000100 ~ A7I005700	(현행과 같음)			
A7I005800	갈매보리수나무	비타민나무, Sea buckthorn	*Hippophae rhamnoides* L.	열매(씨앗제외), 잎,
A7I005900 ~ A7I163500	(현행과 같음)			
<삭 제>				
A7I163700 ~ A7I184300	(현행과 같음)			
<삭 제>				
A7I184500 ~ A7I367400	(현행과 같음)			

[별표 2] "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"의 목록

1. 식물성

고유번호	명칭	기타명칭 또는 시장명칭	학명 또는 특성	사용부위(생약명)	사용조건
B7I000100 ~ B7I000400	(현행과 같음)				
B7I000450	갈매보리수나무	비타민나무, Sea buckthorn	*Hippophae rhamnoides* L.	씨앗	유지 제조용 원료에 한함

현 행

B7I000500 ~ B7I014900	(생 략)

2. ~ 4. (생 략)

[별표 3] (생 략)

[별표 4]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

(1) ~ (23) (생 략)

(24) 디클로베닐(Dichlobenil)
(생 략)
복숭아 0.15[T]

(25) ~ (30) (생 략)

(31) 마이클로뷰타닐(Myclobutanil)
(생 략)
모과 1.0[T]

(32) ~ (58) (생 략)

(59) 비터타놀(Bitertanol)
(생 략)
체리 2.0[T]

개 정(안)

	rn			
B7I000500 ~ B7I014900	(현행과 같음)			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[별표 3] (현행과 같음)

[별표 4]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

(1) ~ (23) (현행과 같음)

(24) 디클로베닐(Dichlobenil)
(현행과 같음)
복숭아 0.05

(25) ~ (30) (현행과 같음)

(31) 마이클로뷰타닐(Myclobutanil)
(현행과 같음)
모과 0.3

(32) ~ (58) (현행과 같음)

(59) 비터타놀(Bitertanol)
(현행과 같음)
체리 1.0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최민지 / 세계무역기구과 / 2018-07-26 09:17:24

현 행	개 정(안)
(60) ~ (65) (생 략)	(60) ~ (65) (현행과 같음)
(66) 사이퍼메트린(Cypermethrin) (생 략) 마늘 5.0[T] 밤 2.0[T] 양파 0.1[T]	(66) 사이퍼메트린(Cypermethrin) (현행과 같음) 마늘 0.05 밤 0.05 양파 0.05
(67) 사이플루트린(Cyfluthrin) (생 략) 대두 0.5[T]	(67) 사이플루트린(Cyfluthrin) (현행과 같음) 대두 0.05
(68) 사이할로트린(Cyhalothrin) (생 략) 멜론 0.5[T]	(68) 사이할로트린(Cyhalothrin) (현행과 같음) 멜론 0.05
(69) ~ (177) (생 략)	(69) ~ (177) (현행과 같음)
(178) 폭심(Phoxim) (생 략) 마늘 0.1[T]	(178) 폭심(Phoxim) (현행과 같음) 마늘 0.05
(179) ~ (301) (생 략)	(179) ~ (301) (현행과 같음)

현 행	개 정(안)
(302) 포세틸-알루미늄(Fosetyl-aluminium) (생 략) 고추 20.0[T]	(302) 포세틸-알루미늄(Fosetyl-aluminium) (현행과 같음) 고추 3.0
(303) ~ (470) (생 략)	(303) ~ (470) (현행과 같음)
[별표 5] ~ [별표 7] (생 략)	[별표 5] ~ [별표 7] (현행과 같음)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최민지 / 세계무역기구과 / 2018-07-26 09:17:24